연구개발비 사용용도(제20조제1항 관련)

1. 직접비

항목	사용용도					
가. 인건비	1)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					
	2)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					
	는 인건비					
나. 학생인건비	1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(이하 "대학					
	등"이라 한다)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					
	가)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					
	나)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」 제3조제1호부터 제3					
	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					
	다)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・운영					
	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					
	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					
	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					
	2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					
	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·연 협동과정을 통하					
	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					
	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					
	가)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・운영 및 육성에 관한					
	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					
	나)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・운영					
	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					
	부출연연구기관					
	다)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」 제3조제4호부터 제					
	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					
	3) 2)가)부터 다)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					
	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					
	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					
다. 연구시설	1) 연구시설·장비 구입·설치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					

• 장비비	한 연구시설·장비의 구입·설치비,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			
	2) 연구시설·장비 임차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 구시설·장비의 임차비			
	3) 연구시설·장비 운영·유지비: 유지·보수비, 운영비 또 는 이전 설치비			
	4) 연구인프라 조성비: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·시설의 매입·임차· 조성비, 설계·건축·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·설비비			
라. 연구재료비	1) 연구재료 구입비: 시약·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) 연구개발과제 관리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) 연구재료 제작비: 시험제품·시험설비 제작비용			
마. 위탁연구 개발비	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			
바. 국제공동	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			
연구개발비	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			
사. 연구개발	가)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			
부담비	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			
	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			
	나)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			
	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			
	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 급하는 비용			
아. 연구활동비	가)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: 기술・특허・표준 정보 조사・분			
	석, 원천·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			
	동에 필요한 비용			
	나)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: 기술도입비, 전문가 활용비, 연구			
	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 한 비용			
	다) 회의비: 회의장 임차료, 속기료,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			
	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세미나 개최			
	비용			

- 라) 출장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
- 마) 소프트웨어 활용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·설치·임차·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·네트워크의 이용료
- 바) 연구실 운영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·설치·임차·사용대차 비용, 사무용품비,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 비용
- 사) 연구인력 지원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·훈련 비용, 학회·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(특근) 식대
- 아)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: 외국에 소재한 정부·기관·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 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,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 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
- 자) 종합사업관리비: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·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자문이나 관리 비용
- 차)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: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
- 카) 그 밖의 비용: 문헌구입비, 논문 게재료, 인쇄·복사·인화비, 슬라이드 제작비, 각종 세금 및 공과금, 우편요금, 택배비, 수수료, 공공요금, 일용직(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)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
- 자.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(학생 연구자를 포함한다)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차. 보안수당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
- 자. 보안수당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(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)에 게 지급하는 장려금

2. 간접비

항목	사용용도
----	------

- 가. 인력지원비 1) 연구지원인력 인건비
 - 2)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 능률성과급
 - 2의2)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 는 비용
 - 가) 일시적 연구중단(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 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) 기간 동안의 급여
 - 나)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 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 안의 급여
 - 3) 제1호나목2)가)부터 다)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
 - 가) 3개월 이상의 교육·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
 - 나)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
 - 다) 일시적 연구중단(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 다) 기간 동안의 급여
 - 라)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 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

- 나. 연구지원비 1) 기관 공통 비용: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 통 경비
 - 2) 사업단 연구단 운영비: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 · 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
 - 3) 기반시설 · 장비 구축 · 운영비: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·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 는 비용
 - 가)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
 - 나)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·장비 구 입비
 - 다)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: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

활용에 소요되는 비용

- 4) 연구실안전관리비: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률」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
- 4의2) 학생산재보험료: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3조의2 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 험료
- 5) 연구보안관리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 욧
 - 가) 보안장비 구입, 보안교육, 보안취약점 진단,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
 - 나)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
 - 다)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)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
- 6) 연구윤리활동비: 연구윤리규정 제정 · 운영, 연구윤리 교 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 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
- 7) 연구활동지원금: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 으로 학술용 도서·전자정보 구입비, 실험실 운영 지원비,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 이 인정하는 비용

지원비

- 다. 성과활용 1) 과학문화활동비: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 동 비용
 - 가)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 로그램
 - 나)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
 - 다) 홍보전문가 양성
 - 라)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
 - 2)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
 - 가)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 된 지식재산권의 출원·등록·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 용

- 나)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
- 다)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
- 라) 연구노트의 작성·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·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·인식확산 활동,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
- 3) 기술창업 출연·출자금: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, 학교기업, 실험 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

비고

- 1. "학생연구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「고등교육법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·학사학 위과정·석사학위과정·학석사통합과정·박사학위과정·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
 - 나.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
 - 다.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「학술진흥법」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 업으로 추진하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
- 2. "연구개발서비스"란 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 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.
- 2의2. "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"란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.
- 2의3. "박사후연구자"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 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사람(대학에 소속된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 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- 3. "기술지주회사"란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 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.
- 4. "학교기업"이란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 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.
- 5. "실험실공장"이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5항에 따른 실

험실공장을 말한다.

6. "연구소기업"이란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.